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2일, 윤준병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의원)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 관련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감면 정책 등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농업인과 귀농인 등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 그리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제6조제4항)

개정안 제6조제4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¹⁾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현행법 제6조제4항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6조제4항은 귀농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여 농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 신성범(Ⅱ)의원안은 일몰기한을 3년, 김종양·정희용(Ⅱ)의원안은 일몰기한을 각각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6조제4항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내역사업인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3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을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하의 세대주는 동 사업에 신청하여 농지 등 영농기반 구입을 위한 융자를 받을 수 있음.

개정안 제6조제4항을 통한 일몰기한 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기존의 지방세 특례 지급 현황, 정부의 융자 지원 사업 및 귀농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제10조제2항)

개정안 제10조제2항은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 현행법 제10조제2항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여건 악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 등을 감안할 때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

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개정안 제10조제2항을 통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 신성범(I)의원안은 일몰기한을 3년, 김종양의원안은 일몰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종양의원안에 따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323.5억원(연평균 6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 여건 악화 등으로 농어업인의 영농사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나, 올해(2024년) 일몰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정부안을 검토 중으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참고로, 주민세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소규모 영세 농어업인은 면제 사업장임.

「지방세법」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국가 등에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의 재산세 면제 연장(개정안 제13조제3항)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개정안의 감면대상인 생활환경정비사업³⁾의 주요 사업에는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이 포함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용지 등을 조성 후 분양하는 사업이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시설의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설치 및 단지 조성, 주택 건축 및 분양·임대하는 사업임⁴⁾.

개정안은 현행법 제13조제3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 등⁵⁾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동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I)의원안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5억원(연평균 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개정안 제16조제1항)

개정안 제16조제1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⁶⁾에 따른 생활

4)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요)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280만원 한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 현행법 제16조제1항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 및 빈집 증가에 따른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주택개량에 따른 감면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주택개량을 통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농·어촌 주택의 신축·증축·대수선 등을 촉진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 신성범(Ⅲ)의원안은 일몰기한을 3년, 김중양의원안은 일몰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종양의원안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53억원(연평균 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5)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제35조의2)

개정안 제35조의2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57)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4조제1항8)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토지공시가격등”) 6억원 까지 재산세액을 면제하고,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있는 현행법 제35조의2의 일몰기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023년 농가고령인구가 처음으로 50%를 넘어 농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⁹⁾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하므로 고령층 농민들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계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그 요건이 제한되고 있는 점¹⁰⁾ 등을 감안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 두 개정안 모두 일몰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종양의원안에 따라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산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49억원(연평균 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9)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농가 52.6%, 임가 52.8%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①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공사에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령) 이상일 것

2.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6)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개정안 제64조제1항)

개정안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 국제선박은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상선으로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을 의미함¹¹⁾.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 규정은 1999년 도입되었는데, 이는 자국 선박의 해외 치적을 방지하고, 국적선대 확충을 통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임¹²⁾.

해양수산부의 국적선박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제선박 등록 건수는 2004년 474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1,365척(국적선 687척,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678척)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연구원의 2023년 연구자료¹³⁾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박수 기준으로 한국의 해외치적 선박 비중이 약 50% 수준으로

11)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27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선박”이란 국제항행(國際航行)을 하는 상선(商船)으로서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12)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22면·23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참고로, 전통적으로 해운업은 이동의 용이성으로 인해 편의치적 제도가 자리 잡았으나, 주요 해운국들은 국가안보 및 자국 해운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편의치적 제도는 해운정책, 노동, 세금 및 기타 비용 등과 관련된 국가의 여러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의 국가에서 형식상의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선박 소유권을 귀속시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유지하는 관행을 의미함(김진권·홍성화, 2012)

13)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27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유지되고 있으나, 순톤수 기준으로는 해외치적 비중이 2014년 77.2%에서 83.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지배 상선 중 대형 선박의 해외치적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개정안을 통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국제선박 등록을 위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54.4억원(연평균 18.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7)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한 특례(개정안 제64조제2항)

개정안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¹⁴⁾으로 정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및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먼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2항의 적용대상인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은 「해운법」 제24조¹⁵⁾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¹⁶⁾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한 내항화물 운송용 선박을 의미함.

이와 관련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3년 연구보고서¹⁷⁾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선사의 영세성 및 수익성 저하에 따라 선박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구체적으로 2023년 기준 내항화물운송선 중 선령 20년 이상의 선박은 총 1,320척(954,924톤)으로 전체 내항화물운송선 1,921척(2,060,704톤)의 68.7%(척수 기준), 46.34%(총톤수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 운행 중인 노후 선박을 국제사회의 해운분야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높으나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대기업군 선사는 22개로 전체

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15) 「해운법」 제24조(사업의 등록)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16) 「해운법」 제33조(사업의 등록) 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17)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66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사업자의 2.7% 수준임¹⁸⁾.

개정안을 통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선령이 높은 내항운송선을 대체하는 새로운 내항운송선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2항의 적용대상인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은 「해운법」 제4조¹⁹⁾에 따라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²⁰⁾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원양어업선박(취득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²¹⁾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 중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선박을 의미함.

외항운송선의 선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선령 20년 이상의 선박은 202척(4,890,058톤)으로 전체 외항선 1,094척(52,616,324톤)의 18.4%(척

18) 참고로, 3000TEU급 선박을 신조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400억원임(출처: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66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19) 「해운법」 제4조(사업 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20) 「해운법」 제24조(사업의 등록) ① (생략)

②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①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수 기준), 9.3%(총톤수 기준)을 차지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외국항로 전용 선박을 운영하는 외항 운송사업자 등이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I)의원안에 따라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한 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62억원(연평균 3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8)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천연가스 연료 화물용 선박에 대한 특례 (개정안 제64조제3항)

개정안은 제64조제3항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대통령령²²⁾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3항).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3항의 적용대상인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은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여객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② 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한 내항화물 운송용 선박을 의미함.

개정안을 통해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내항화물운송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내항화물운송사업자들이 천연가스 연료 선박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I)의원안에 따라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8억원(연평균 1.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